

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호식

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8년 6월 7일 박봉순 의원 등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8년 6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개정이유
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수수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
- 그 밖에 법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수수료 근거 상위법령 일부 개정 사항 반영(안 별표)
 - 전자파일(문서·도면·사진 등)의 복제
 - 전자파일 1M 초과시 1M당 100원 → 무료
- 법규 명칭의 약칭 사용 변경(안 제5조)
 - 영 →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.)

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전자파일의 수수료를 1M당 100원에서 무료로 변경하며, 약칭을 규정에 맞게 변경하도록 한 것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자료 제출시 전자파일에 대한 수수료가 무료화 됨으로써 주민들의 정보공개 요구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개정으로 판단됩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